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992 발의연월일: 2022. 6. 16.

발 의 자:김용판・이종성・배준영

임병헌 · 김예지 · 서일준

박덕흠 · 김승수 · 구자근

최춘식 • 이주환 • 윤한홍

박대수 · 하영제 · 강대식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위치, 규모, 업종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비율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과세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난 2년간 많은 기업이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의 기한을 연장하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의 과세특례 기한을 2 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 업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 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	감면) ①
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u>2022년 12월</u>	<u>2024년 12월</u>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31일
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	
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	
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	
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	
율을 적용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